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04
------	------

제출일자 : 2024. 4. 15.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2024. 3. 6. ~ 2024. 3. 26.)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3. 6. 13.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나. 조례 적용 범위 확대(안 제4조)

다. 지원 대상 범위 확대(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홀로 사는”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으로, “혼자  
임종”을 “임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인 가구”를 “가구”로 한다.

제4조 중 “1인 가구”를 “가구”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1인 가구”를 “가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 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 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 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u>사회</u> <u>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u> ---- -- <u>임종</u> ----- ----- -----.
2. (생 략)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 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3. ----- ----- ----- <u>가구</u>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 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 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 범위) ----- ----- ----- <u>가구</u> ----- -----.
제7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7조(지원 대상) ----- ----- -----.
1. (생 략) 2.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	1. (현행과 같음) 2. ----- <u>가구</u> --

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 -----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양세연
연락처	2627 - 2926

# 현행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 확충을 위한 조례

[시행 2023. 3. 15.]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22호, 2023. 3. 1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 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 1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지원 및 활동 지원
- 12.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 1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계 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독사예방법 )

[시행 2024. 2. 6.] [법률 제20209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13., 2024. 2. 6.>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협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